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07

발의연월일: 2022. 9. 8.

발 의 자:배준영·조수진·정우택

조은희 • 양금희 • 정동만

김용판 • 윤창현 • 윤재옥

김예지 • 유경준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어,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해 주고 있으나,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 음.

그런데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85조의6(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제85조의6(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의 감면) ① 「사회적기업 육 의 감면) ① -----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라 202 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년 12월 31일-----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 한 과세연도(인증을 받은 날부 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 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 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, 그 다 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②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(2) -----

재활법 . 제22조의4제1항에 따 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애 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 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인 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 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하고, 그 다음 2년 이내 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 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③ ~ ⑧ (생 략)

<u>2025년 12월 31일</u>
③ ~ ⑧ (현행과 같음)